

자조금 대의원 권한 대폭 축소된다

- 대의원들의 의견 반영 전혀 안돼 논란
- 관리위원 선출·대의원회 의결사항 축소·한정시켜

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자조금 대의원 권한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조금 대의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자조금 대의원의 의결사항이 한정되는 등 대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 양돈자조금사무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16조 2항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축종별 대의원들은 관리위원을 기존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서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지명된 자'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은 이를 '대의원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로 최종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이는 축종별 대의원들이 축산단체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해 찬반 의견만 내세울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그 밖에 축산단체의 자조금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4개항으로 정했으나, 수정의견에서 '그 밖에 축산단체의 자조금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마저도 삭제해 3개항으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대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자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대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명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로 변경했으며,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양정**